

국외에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면 이런 제재를 받습니다.

《공직선거법 §218조의30, §218조의31, §218조의26》

①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규정 적용

-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-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사업이나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.

②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동의 제한 (§218조의30)

● 제한 대상자

-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
-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

● 제한 내용 :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·재발급 제한 또는 여권의 반납

● 제한 기간 : 대통령선거일 후 5년(2017. 12. 19.)까지

③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(§218조의31)

● 입국금지 대상자 :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(외국 시민권자 포함)

※ 다만,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

● 입국금지 기간 :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

④ 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(§218조의26)

●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

※ 국외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성 담보

※ 국내선거범죄의 공소시효기간 : 선거일후 6개월 (선거일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)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